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교회 내규(BY LAW)

*본 내규는 1983년 9월 25일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채택되었다.
*본 내규는(1차 개정) 1997년 2월 9일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채택되었다.
*본 내규는(2차 개정) 2002년 6월 30일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채택되었다.
*본 내규는(3차 개정) 2023년 9월 10일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설립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는 주후 1980년 1월 20일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따라 설립되었다.

제 2조 명칭 및 위치
본 교회는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영문: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Indianapolis", 영문 약칭: "KPCI")라 칭하며, 1020 E 101st St., Carmel, IN 46280 에 위치한다.

제 3조 교단
본 교회는 화이트워터 밸리 노회(Whitewater Valley Presbytery), 링컨 트레일즈 대회(Synod of Lincoln Trails), 미국장로교(PCUSA)에 속하며 미국장로교의 헌법과 규례를 따른다.

제 4조 사명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는 마태복음 28:19-20과 사도행전 1:8의 말씀을 근간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젊은이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 복음 전파를 통해 지역 복음화와 열방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마태복음 28:19-20
19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 2 장 교 인

제 5조
본 교회 교인은 등록교인, 세례교인, 활동교인 및 관련교인으로 구분한다.

1. 등록교인

1)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과 미세례교인을 포함하며, 교회의 모든 기관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2) 등록한 세례교인은 6개월이 지나면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항존직 직분자는 이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활동교인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세례교인

1) 본 교회나 건강한 타 교회에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은 교인, 또는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한 모든 교인으로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3. 활동교인

1) 세례받은 18세 이상의 성도로서 본 교회 등록한 교인을 의미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본 교회의 교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다.
3) 공동예배 출석 의무와 헌금 의무와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4. 관련교인

1) 본 교회 소재 지역에 임시로(6개월 이하) 거주하는 교인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관련교인은 본 교단(PCUSA) 소속 교회의 교인이거나 혹은 다른 교단이나 기독교 조직에 속한 회원으로, 본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교인을 말한다. 관련교인은 본 교회의 활동교인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없고, 본 교회의 직제사역이나 다른 직분에 선출될 수 없다.
2) 온라인 가상 교인도 관련교인에 준한다.

제 3 장 공동의회

제 6조 구성

공동의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교회에 등록된 활동교인으로 구성한다.

제 7조 소집과 공고

1. 공동의회는 당회가 결정한 일시에 반드시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개최일 전 두(2) 주일 동안 공고한다.
2. 공동의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당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한다.
   2) 노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3) 활동교인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당회에 의해 소집한다.

3.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맡는다.
4. 당회장 유고 시 노회에서 임명한 자가 그 임무을 대행하며, 서기 유고 시 당회장이 지명한다.
5. 공동의회는 활동교인 1/4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제 8조 공동회의 의안

1. 시무 직분자(장로/안수집사)를 선출하는 일;
2.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
3.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 – 목사(들) 청빙 조건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또는 해소를 요청하거나, 해소에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일;
4. 부동산의 구매, 저당, 또는 매각하는 일;
5. 헌법에 허락된 바에 따라 면제 청원을 노회에 하는 일 (G-2.0404);
6. 연합선교 교회(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를 조직하기 위한 계획의 승인 혹은 연합선교 교회의 개정이나 해체 (G-5.05);
7. 결산과 예산을 인준 하는 일, 내규개정 통과, 공천위원 선출 등을 처리한다.

민법에 어긋나지 않는한, 같은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업무와 법인적 업무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

제 9 조 의결

1. 공동의회의 모든 결의는 유효표 과반수로 한다
2. 무효표는 투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당회장은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투표할 수 없다.

제 4 장 당 회

제 10조 구성

본 교회의 당회는 목사(담임목사, 부목사)와 2인 이상의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제 11조 모임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2. 시무장로 2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당회장 없이는 소집될 수 없으며, 부재 시 노회에 당회의 사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당회 서기는 당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교회의 공동의회와 기타 기관의 기록 문서를 포함하는 의사록과 당회 및 그 밖의 모든 공적 문서들은 당회의 소유물이며, 서기는 그 문서들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5. 정기당회는 분기별로 연 4회 모인다

제 12조 당회 정수 및 의결

1. 당회는 당회장과 시무장로 과반수로 성립된다.
2. 당회 의결은 일반 사항인 경우에는 재적 당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특별사항인 경우에는 재적 당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당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사항에는 담임목사 청빙 조건, 교회 내규 개정, 권징, 예결산, 재산 취득 관계 등이 포함된다.
4. 부목사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13조 당회의 직무

1. 본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 기구이다.
2.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도모하며, 미국장로교의 정치 형태, 예배 모범, 권징 조례의 규정 범위 내에서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다.
3. 예배와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례한다.
4. 교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회적 돌봄의 일을 시행한다.
5. 부서에서 사역할 직분자를 임명하며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한다.
6.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규례서에서 명시된 이사회의 역할은 당회의 직무로 한다.
7.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를 권면하고, 규례서에 명시된 권징조례에 따라 징계하여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한다.

제 14조 당회의 권한

공동의회의 결정 사항이 아닌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당회에 있다.

제 5 장 제직회

제직회는 단독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 조정기관으로서, 위원회 활동 보고와 특별 사역을 보고하며 원활한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기관이다. 다만, 당회로부터 위임된 안건에 한정하여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 15조 구성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모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제 16조 모임

1. 제직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2. 제직회 성원은 1/4로 성립한다.
3. 제직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맡는다.
4. 제직회는 연 1회 이상 모인다.

제 17조 제직회의 직무

1.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받고 요청한 실무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당회에서 요청한 사안을 심의한다.

제 6 장 교회의 직분

제 18조 항존직 구분

1.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항존직 직분이며, 서리집사는 매년 1년 동안 임명 받는 직분이다.
2. 타 교단에서 항존직 직분자가 이명하여 등록 한 경우, 각 호칭과 직분은 당회에서 검증하여 합당한 직분을 부여한다.
3. 항존직은 시무, 협동, 휴무, 등록, 은퇴로 구분한다.
4. 은퇴 직분에 대한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에서 시무 또는 협동을 시작한 해로부터15년 이상이경과되어야한다;
   2) 75세 이상이어야 한다;
   3) 그리고, 시무 직분의 공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에 해당하는 직분자가 은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회에서 검토한 후 은퇴 직분자로 추대된다.

   은퇴 직분에 대한 규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19조 장로

장로는 시무장로, 협동장로, 휴무장로, 등록장로, 은퇴장로로 구분하며, 은퇴장로는 제6장 18조 4항을 따른다.

1. 시무장로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며, 본 교회에서 제시한 일정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임직식을 갖는다.

1) 미국장로교 헌법을 존중하여 따르며,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신앙의 기본 임무인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을 성실히 이행하여 성도의 본이 되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
2)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 받은 지 3년 이상 된 자
3) 이명한 안수집사로 본 교회에서 시무안수집사로 3년 이상 시무한 자
4) 협동장로로 섬기거나 섬겼던 자 또는 휴무장로인 자

2. 협동장로

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여 1년 이상 경과 후, 당회의 추천을 받아 협동장로로 취임하며, 1년 이상 봉사하면 시무장로로 공천될 수 있다.

3. 휴무장로

시무장로 또는 협동장로로서 임기를 마친 장로이며, 1년 이상 경과 후 시무장로로 공천될 수 있다.

4.등록장로

타 교회에서 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장로(은퇴장로 포함)를 의미하며, 등록할 경우 장로임직 증명서 또는 이명증서를 교회에 제출해야 하며, 교회에서 요청하는 사역을 맡아 섬길 수 있다.

5. **은퇴장로**

제 6장 18조 4항 규정에 따라 은퇴직분을 받은 장로이며, 본 교회에서 시무 또는 협동을 시작한 해로부터 15년이 경과한 75세 이상인 장로가 대상이 된다.

제 20조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시무안수집사, 협동안수집사, 휴무안수집사, 등록안수집사, 은퇴안수집사로 구분하며 규정은 장로와 동일하다.

(시무안수집사)

자격:

1. 미국장로교 헌법을 존중하여 따르며,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신앙의 기본 임무인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을 성실히 이행하여 성도의 본이 되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2.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2년 이상 봉사한 자

사역:

성경에 제시된 집사직은 연민과 전도와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은자, 외로운 자, 압제 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영적 인품, 정직한 평판, 모범적인 삶, 형제자매 사랑, 진심 어린 연민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역에 선출되어야 한다

제 21 조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선출 및 임기

(선출) 1. 공천위원회에서 공천 받은 자로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2.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공천을 받을 경우 3년을 연임할 수 있으나, 6년 후 반드시 1년 이상 휴무해야 한다.

제 22조 권사

항존직 권사는 시무권사, 협동권사, 등록권사, 은퇴권사로 구분하며 당회에서 추천한다.
타 교회에서 이명한 권사는 본 교회 등록 시 담임목사 및 당회로부터 당회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직분에 대한 본 교회 규정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권사의 직무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1. 시무권사

본 교회의 시무권사는 등록 후 5년 동안 서리집사로 헌신한 자 중에서 만 55세 이상인 자, 또는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시무한 55세 이상인 자를 필요한 인원수 만큼 당회에서 추천하여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 취임한다. 다만, 안수집사에서 시무권사로 취임한 자는 장로로 공천될 수 있다.

2. 협동권사, 등록권사, 은퇴권사는 장로의 규정과 동일하다.

제 23조 서리집사

(자격)

1. 본 교회 서리집사는 세례교인으로서 만 1년 이상 활동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한 성도로서 당회에서 임명한다.
2. 타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임명받은 성도가 등록한 후 만 3개월 이상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확인되면 다음 해에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임기) 임기는 1년이며, 매년 임명한다.

제 7 장 특별위원회

1. 공천위원회

제 24조 선출

공천위원은-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당회원 2명과 시무안수집사 1명은 추천을 받으며, 남, 여 각 2명은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한다.

제 25조 구성

공천위원회는 당회가 지명한 2 명의 시무장로(이 중에서 한 명은 공천위원장이 됨), 시무안수집사 중 1 명, 활동교인 중에서 남, 여 각 2명이며, 총 7 명으로 구성한다. 담임 목사는 공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투표권은 없다. 단, 선출 된 공천위원은 공천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 26조 소집

공천위원장이나 당회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된다.

제 27조 임기

공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28조 임무

당회의 공천기준 및 정수를 통보받아, 장로 및 집사후보를 공천하여 공동의회에 천거한다.

제 29조 공천위원의 결원

공천위원에 선출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 인원은 충원하지 않는다.

2. 감사위원회

제 30조 구성

당회에서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은 감사위원 2명을 추천하여 당회 인준 후 당회가 임명하며, 총 3명으로 구성한다.

제 31조 임무

1. 교회 재정 감사를 매년 정기 공동의회 적어도 1개월 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2. 자치기관의 감사는 각 자치기관내에서 시행한 후 당회에 보고한다. 보고된 내용은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한다.

제 32조 임기

1년으로 한다. 다만, 3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3.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당회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건축위원장이 추천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3조 임무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금 확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계획을 당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당회에 보고하는 소통의 의무가 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 및 정책 수립은 건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4조 임기

건축이 마무리되어 완공식이 끝나면 임기도 종료된다.

4. 재정위원회

제 35조 구성

당회에서 선출한 재정 담당은 본 교회의 재정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재정위원회 구성은 시무안수집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36조 임무

재정위원회는 본 교회의 모든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한다.
재정위원장은 당회와 공동의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재정 현황을 보고한다.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입금을 절차에 따라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지출은 반드시 수표로 집행한다.

모든 지출은 청구서에 의하여 재정위원장에게 청구 서명하여 집행하며, 재정위원장 부재 시 당회 서기의 서명으로 청구되고 집행되어야한다.

제37조 임기
재정위원의 임기 및 재정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제38조 재정위원장은 예산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5. 예산위원회

제39조 구성
각 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하며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예산위원장은 시무장로 중 한 명이 맡는다.

제40조 임무
당회의 지시에 따라 매년 정기 공동의회 2개월 전에 소집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작성하며, 당회의 인준을 거쳐 정기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공동의회에서 보고는 재정위원장이 결산보고를 하고, 예산위원장이 예산안을 제출한다.

제41조 임기
1년으로 한다. 다만, 3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6. 상임위원회 및 자치기관

당회의 결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 42조 선거관리
1. 공동의회의 모든 선거관리는 당회에서 관장한다.
2. 모든 선거는 해당 항에 명시되지 않는 한, 구두 공천과 재청으로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된다. 다만, 당회나 당회장 등에 위임된 사항은 가부만 물어 결정한다.

제 43조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교단 헌법에 준하며, 각 위원회, 부서, 기관의 내규는 별도로 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44조
본 내규는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갖는다.